

결론을 대신하는 문제제기

며칠 후면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가 출범된지 만 3주년(12. 15)을 맞는다. 그리고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실은 이제 논의의 대상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 버렸다. 97년 1월 1일부터 정부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내년부터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구매하는 물품입찰이나 공사발주(건축설계도 포함됨)에 외국업체의 참여가 전면 허용된다. 이는 지난 94년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EC 등 24개국이 서명한 WTO정부조달 협정이 우리나라의 경우 97년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이다.

민간건설 및 건축설계의 경우는 이미 1994년에 체결한 WTO상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의해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GATS에서는 시장진입(외국건축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나 우리 건축사가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등과 같은 원칙적인 기준만을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AGP(정부

조달협정,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서는 세부적인 기술사항(Technical Specification)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침을 설정해 놓고 있다. 물론 민간시장에 적용되는 GATS의 기준에 당장에는 관급시장에 적용되는 AGP의 기준이 적용될리야 없지마는 급속한 국제질서로의 편입이 가시화 된다면 예측못할 혼란이 생기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지난 3년간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필두로 "조달제도 국제화추진 기획단"과 이어서 "건설제도 기획단"을 발족시켜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기획단에서 준비한 결과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음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니리라고 믿는다.

건설회사에게 설계권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의 비약에서 시작된 정부의 아이디어는 급기야는 건축설계가 건설업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논리의 파탄을 가져오면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해외개방대책을 넘어선 자폐증(Autism)에 가까운 정신질환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부는 역사에 오점을 남길정도의 과오를 범하면서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느껴진다.

1. 당국의 건축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건축설계) 분야를 다루어야 될 부분은 서비스무역 분야의 과학기술처와 정부조달분야의 건교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기의 조직 구성을 일견한 후 어느 누가 건축분야가 심도있게 검토, 연구되었으리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건축전공자는 한사람도 없이 급조된 조직에서 대한민국 건축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오늘의 우리비극.

-WTO의 무역 개념이 경제적 기준으로 되어 있다하여 건설부문을 건설경제파에 위임하는 오늘의 우리 모순.

-거기에 거대하게 군림하고 있는 재경원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오늘의 우리 현실.

WTO와 건축환경(I)

Architecture Environment & WTO

시장개방 100일을 앞둔 현황과 문제인식

박서홍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위원장, (주)희산종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Suh-Hong

WTO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은 우리의 건설시장은 물론 생활과 환경,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건축은 어디로 가고 있나?

무한경쟁의 생존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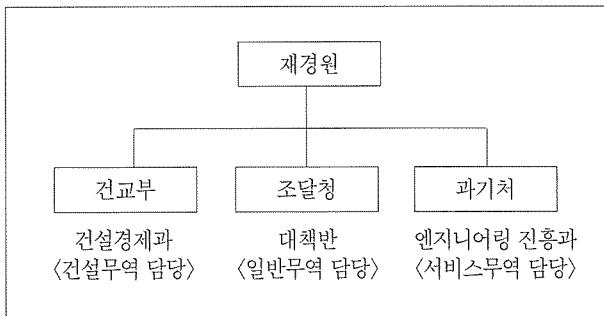
안타깝게도 우리 건축계는 강 건너 불보듯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 또한 전문업계의 성격과 빌전 방향에 대한 비전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런

준비없이 휩쓸려 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WTO 시장개방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건설산업기본

법제정을 건축의 입장에서 분석해보고, WTO체제에 우리건축이 어떻게 미래의 비전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기획해 보고자 시장개방 100일을 앞둔 우리 건축계의 현황과 문제인식(I), WTO의 실체와 관계법해설(II) 등 2회에 걸쳐 연재코자 한다. <편집자 주>

<표 - 1>

정부개방대책 구성조직



건교부에서 마련한 건설제도 기획단(표-2)의 구성에 이르러선 정부 당국의 건축을 보는 이해의 정도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건축과 구분되는 건설의 산업 경제적 중요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설을 보는 시각이 왜 토목건설우위의 편차를 갖고 이루어져야 하는가.

나아가 건교부 내에 건축을 총괄하는 “건축국(局)”이나 없는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만 하나. 시장규모면에서 보더라도 토목시장과 건축물 시장은 전체 구성에서 건축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더구나 건축과 건설의 관계야말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연주되는 음악과 같은 관계이거늘 그 각각의 독자성과 유기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드는 편집광적인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1865년 M.I.T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정의 내린 건설에 대한 건축의 상대적인 기준은 “이제 미국은 건축의 본질이 예술성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후 100년이상

전세계의 법과 제도의 기본이 되고 있다. 기획단 구성은 글자 그대로 건설제도만을 위한 개선 조직인 것이다.

건축은 어디쯤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표 - 3> 우리나라 건설시장 규모전망('95)

연 도	1992	1996	1998	2001	2005
토목 시장	공 공	2539.7	3543.5	3922.7	3875.0
	민 간	1091.0	1332.6	1651.7	1815.3
	합 계	3530.7	4876.1	5574.4	5690.3
건축물 시장	공 공	1662.2	1940.5	2204.7	2810.2
	민 간	8372.0	10827.5	12301.5	15680.3
	합 계	10034.2	12768.0	14506.2	18490.6
전 체	13664.9	17644.1	20080.7	24180.9	29928.0
공 공	4201.9	5485.0	6127.4	6685.2	7992.0
민 간	9463.0	12160.1	13953.2	17495.6	21936.6

2. WTO 협상 태도에 문제가 있다.

지나간 얘기지만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건축설계와 건설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거국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WTO협상에 임했다. 물경 200여명에 이르는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여 법의 개념과 질서가 전혀 상이한(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계통의 법률이 없는 나라) 구미와의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 전문가가 다수 참여 하였음은 물론이며 결국 건축 설계 분야에서 일본이 원하는 수준의 양보를 받아내고야 말았다.(일본 양허표,<표-4> 참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건설개방에 안달이 난 것 같은 태도로 건축을 스스럼없이 넘쳐넘겨주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 변호사 한명 없이 협상을 종결지었다.(한국 양허표 <표-5> 참조)

– 국제법 협상을 하는데 해당 변호사 한명 없이 씩씩하게 해치우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더욱이 건설(construction)과 달리 건축(architecture)

<표 - 4> 일본 양허표(정부조달협정)

건축설계 서비스 : 다음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양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설계 서비스 중 최종 설계서비스 • 계약자문 서비스 • 기초 및 건물구조의 시공을 위한 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건물기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 시공 및 설치 단계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축설계 서비스 : 아무런 조건없이 양허함
주) 최종설계서비스란(Final Design Services of Architectural Design Services) 실시 설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됨	주) 건축설계서비스는 전문야를 모두 포함하는 CPC분류 8671이며 GNS/W/120구분은 I. A.d로 되어있음.	

에 대한 독자성 및 특별성을 인정하고 있는 WTO 체제의 기본을 망각한 이러한 태도는 역사의 평가를 받으리

라고 믿는다.

3. 정부의 재벌 우대정책은 개편 되어야 한다.

93년 기준으로 30대 재벌의 계열회사는 604개로 총매출액은 88조 493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총자산은 221조 260억원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동년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38조 500억원임) 재벌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보통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생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광공업 부문 매출액의 35%, 부가가치의 30%, 유형고정자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화학 분야에서는 무려 50%의 압도적 비중으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자금과 인력, 기술을 의미하는 생산요소중 자금 부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은행대출의 20.2%(92년), 단자 대출의 41.3%(88년), 증권조달액의 51.6%(92년)에 달하며 30대 재벌이 영위하는 금융회사는 총 65개로 그들의 자본금은 시중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전체 자본금의 45%(93년)에 이르는 금융산업 지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력 부문도 예외없이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바 30대 재벌의 광공업 부문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0년)에 불과하지만 대졸이상 인력의 경우엔 전국 104개 4년제 대학 졸업생중(89년) 52%를 50대 재벌이 썩쓸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과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와서 재벌의 시장지배력의 문제는 지금 한국경제 전반에 걸친 중대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WTO 체제하에서는 쉽게 조정, 변형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S건설이 1995년 입사예정으로 서울 소재 각 대학에 요청하면서 선무공작을 벌였던 건축과 졸업예정자 수는 1,000명이었다. <표-6> 일개 하나의 건설회사가 재벌이라는 모기업을 배경으로 당해년도 서울지역 건축과 졸업생을 전원 입사시키겠다는 오만한 발상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퇴영적이면서 독과점적인 사고

<표-6> 건축(공)학과 학부 학생수(94년)

	대학수	입학정원
서울	14	940명
수도권	26	1,835명
전국	64	4,890명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모의 비대화와 문어발식 확장이 불러 일으키는 부정적인 효과는 우리 경제 전반에 무거운 짐으로서 부과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천민자본주의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아무리 그들이 주장하는 시너지 효과를 백번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국민경제가 파탄에 직면하고 있고 국민 대중의 이익을 외면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갈등구조를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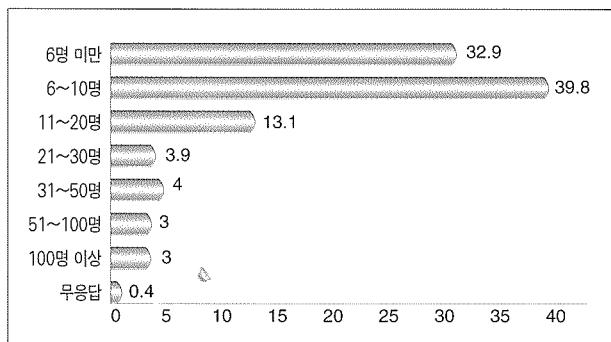
기시키는 재벌편향의 정책 및 사고는 개선되어야 한다.

4. 중소기업으로서의 건축설계업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헌법 123조 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과 운송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의 기업을 상업과 서비스업의 경우는 20인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표-7>(건축설계업은 한개의 Project당 5명 내외의 고급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세계적인 관행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수는 90년 기준으로 총 148만개에 달하지만 이중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체 수는 67,679사이며 이는 전 제조업체의 98.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 중소기업은 출하액에서 42.6%, 부가가치에서 44.3%, 수출액에서 40%를 점하고 있다. 이와같이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표-7>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구성비(95년 기준) 단위 : %



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설문조사

① 지역 경제에 기여하여 균형있는 발전에 공헌한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나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이 필요하다.

② 광범위한 고용을 창출한다 :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③ 민족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특히 WTO 체제하에서의 자본의 아이덴티티는 우리민족이 최후로 고수해야할 성역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④ 산업구조를 개선시켜 준다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백화점식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분야의 전문화를 유도하여 전문분야의 기술개발을 주도하게 되며 이 결과는 국민경제의 저변을 튼튼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한다.

⑤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 : 의사결정 과정의 신속, 정확함 및 현장경험을 바탕으로한 투자는 최대의 투자효율을 얻을 수 있다.

⑥ 수출증가 기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 최근의 반도체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의 한 번의 시행착오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디폴드 소량 생산으로(건축의 경우는 주문생산) 수출과 서민층의 소

유 및 사용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대기업들이 M&A 기법을 활용해 재벌에 흡수하려는 술수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중소기업의 보호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흔히 예로 드는 대만의 문제는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만은 분배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부민정책>의 기본 이념을 근간으로 하였고, 우리나라는 재벌위주의 성장주도 정책을 실시하여 <부국정책>을 기본틀로 하였다. 이 결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수출지향의 경쟁력 높은 기업이 되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수입대체에 급급하는 소극적 기업이 되고 말았다. 특히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절대적인 분야에서의(디자인 분야가 대표적) 대만과 한국의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리라는 것은 이미 검증된 결과라 하겠다.

5. 건축사업과 변호사업의 협평성에 문제있다.

WTO 협정서에 포함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건축이나 법무의 분야를 사업서비스 중의 전문직업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법무서비스(Legal Service)나 건축서비스(Architectural Service) 등의 용어는 미국에서 만들어져 사용되어온 용어로서 공익성 보다는 직업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서 종래의 변호사나 건축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해온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

이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개념이 이미 국제적으로 사용되어서 국제화된 용어이고 건축사나 변호사의 업무를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서비스라는 측면이 강하다 하여 별 다른 무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 체계나 사회관념상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변호사나 건축사의 문제가 시장개방 절충과정에서는 천양지차의 결과로 도출되고 말았다. 개방의 종류 및 수준이 명기되는 최종 양허표상에서 건축서비스는 거의 개방된 반면 법무서비스는 개방업종 자체가 제외된 상태로 협상이 종결되었다.<표-8>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법무서비스의 특수성과 현황 등을 이유로 강력한 개방불가 입장을 견지하여 드디어는 법조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쟁취하고야 말았다.

이에 우리나라 법무서비스의 현황을 구체화 해봄으로써 건축서비스와의 형평성에서 간과되어 왔던 문제가 제기 되리라고 본다.

변호사 자격 : 변호사법(제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구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와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있다.

WTO 추후 협상에 대비해 변호사법 개정령('96. 9)에서는 국적 조항이 삭제 되는 안이 준비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내 변호사가 될 수는 없다.

변호사의 영업 : 동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자격을 부여 받은 변호사가 국내에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표 - 8>

UR서비스분야 최종양허업종(15개 분야 78개 업종)

구 분	업종수	양 허 업 종
1. 사업 서비스 (31개 업종)	전문직 서비스	6 공인회계, 세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종합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5 컴퓨터 설비자문, 소프트웨어 시행, 데이터 처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타 컴퓨터 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1 인문·사회과학부문 R & D 서비스
	임대서비스	4 선박임대서비스, 항공기임대, 기타 운수장비임대, 기타 기계장비임대
	기타 사업 서비스	15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 사업관리, 기술적 진단, 농축산업관련자문, 과학기술자문, 국제회의 용역, 기타 서비스, 어업관련자문, 광업관련자문, 장비유지 및 수선, 사진, 포장인쇄서비스
2. 커뮤니케이션 (9개업종)	통신서비스	7 전자사서함, 음성사서함, 온라인 정보검색, 전자적 데이터 교환, 고도 팩시밀리,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처리
	시청각 서비스	2 영화 및 비디오 제작·보급, 음반제작·배급서비스
3. 건설		5 일반건축, 일반토목, 설치 및 조립, 건축 마무리 공사, 기타 서비스
4. 유통		4 도매, 소매, 중개, 프랜차이징 서비스
5. 환경		3 하수서비스, 폐기물처리, 기타 서비스
6. 금융		14 예금 및 관련업무, 대출 및 관련업무, 금융리스, 지급 및 송금, 지급보증,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증권인수, 투자신탁, 금융결재, 투자자문,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재보험 및 재개보험
7. 관광		3 호텔, 여행알선, 관광안내서비스
8. 운송	해운	3 외항여객운송, 외항화물운송, 선박유지 및 수선서비스
	항공	1 항공보조 서비스
	도로운송	1 화물트럭킹 서비스
운송보조 서비스	4	창고서비스, 화물운송대리, 기타서비스, 화물취급서비스

자료 : 대한민국 정부(UR 서비스 최종 양허표) 1993. 12.

법무부장관의 개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변호사의 자격 : 법무장관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던 자격부여(국내 변호사)가 새로운 법개정으로 국내 시험만 합격하면 가능하도록 문호개방(개정 법률 13조)

외국인 변호사의 영업 : 자격요건과 마찬가지로 국내 변호사의 개업허가 요건과 동일하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규제 : 동법 제90조 제2호에 의거 비변호사(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법률사무 종사는 금지되어 있다.(일본의 경우도 동일하다. 일본 변호사법 제72조)

변호사 업무의 독점적 영역 : 비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부분, 계약, 회사 설립업무, 사채발행 등) 그 외의 모든 법률업무,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건축사법에서의 설계의 세부적 구분이 필요한 부분으로 간주됨. 계획설계는 비건축사에게 개방하고 인허가 부분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반드시 건축사만의 업무라는 영역구분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음)

동업행위의 규제 : 동법 제90조 제3항에 의거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제휴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자문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명의 대여를 통한 제휴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의 고용금지 및 공동경영 금지 : 장차의 WTO 협상에 대비하여 준비한 변호사법 개정령에서는 기존 변호사 자격 및 영업 행위에 대한 독점적 성격의 규정을 신설하였음.

〈표 - 9〉 동법 제27조 ③④항(96. 9. 입법예고안)

- ③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업 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제휴·동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변호사사업을 영위하거나 변호사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 을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변호사사무소의 대표 : 전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무 법인의 대표는 변호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법무서비스 분야는 미개방된 상태이므로 외국인 변호사의 경우 자연인이나 법인은 법무 법인의 운영자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 변호사들이 관광비자 등을 발급받아 입국목적과는 다른 법률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나 외국인 합작 법인의 경우 회사의 고문이나 기타 임무를 띠고 입국하여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현실적인 규제방법이

WTO상의 인력이동, Movement of Personnel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제법상의 해석은 김영철 검사(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에 의함

없다.

법무서비스 개방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 : 법조인들이 보는 시각이 대체로 부정적인데 반하여 경제인들이 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대세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개방의 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개혁 및 국내 변호사 업무의 개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소송업무(대리) 중심의 종래의 변호사 업무의 영역을 소송외 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선진화, 전문화를 추구하는 길만이 최선이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6. 건축사 자격과 면허체계의 정비 문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국내규제, Domestic Regulation) 4항에 의하면 “자격요건과 절차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정립한다” 또한 동 제7조 (인정, Recognition)에서는 “특정국내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어서 자격이나 면허요건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격이나 면허의 요건이고 그 바탕을 형성하는 교육이 문제가 된다. 물론 GATS에서는 GATT(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와는 달리 서비스라는 특이성을 감안하여 각국의 독특한 국내 규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규제를 인정하는 규제권리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 반면 국가정책목표(National policy objectives) 범주의 규제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거론되는 규제(Regulation)의 뜻은 GATT상의 무역장벽(Barriers)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용어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의 건축사제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외국의 동등한 자격증을 국내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도(자격, 면허)의 규제(시험 등)가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이 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사시험 → 자격 → 면허 → 등록이라는 약간은 난해한 규범을 갖고 건축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점 불공정거래의 대상으로 지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7. 건축교육의 문제는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외국의 건축사제도를 볼 것 같으면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복잡성 이전에 교육 및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와 수준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표-10〉 또 건축 교육의 거의 모두가 설계교육에 집중되어 있어서 졸업후의 자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 자격을 위한 수업연수에 있어서도 평균 6년이라는 기간이 별로 저항없이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4년제 교육기준은 GATS 제6조의 원칙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 :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에 위배된다는 압력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교육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① 거의 대부분의 건축과가 공학계열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73개 건축과 중 72개 학과가 공과계
열에 소속되어 있다. 일본의 제도를 거의 모방한 과거의
전통에 주된 이유가 있는데 예술적인 측면과 인문 사회
과학적 측면의 종합교육은 불가능하다.

② 각종 국가시험제도가 교육의 전통성을 방해하고 있

다.

기술자격의 종류에 속해있는 건축사 자격은 상식적기
준에서 평가체계가 틀려야 하며 기술사 자격과의 관계에
서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건축사예비시험의 기사1급의 하위개념으로 전락
해 있는 현행제도체계는 하루 빨리 개선 되어야될 요인
을 갖고 있다.

<표 - 10>

외국의 건축교육과 건축사제도 비교표('95)

구 분	일 본	미 국	프 랑 스	영 국	독 일
학제 및 학위	○ 학부 4년, 대학원(석사 2년, 박사 3년, 논문박사) ○ 공대소속의 우리와 학제 및 대학 동일	○ 4년제 학부 : B.S 등 ○ 5년제 학부 : B.Arch 등 ○ 전문대학원 : M.Arch 등 (3년 이상)	○ 5년 단일 학제 및 학 위 · 2년 기초과정 (D.E.F.A.) · 3년 공인건축가과정 (D.P.L.G.) · 1~2년 대학원 (C.E.A.A.D.E.A.) ○ 학과과정(5년) + 논문(1년) + 실습 최소 3~6개월)	○ 학사과정(3년) + 1차 실무(1년) + 석사과정(2년) + 2차 실무(1년) 후 Dip.	○ 공과대학(11개) 예술대학(5개) 전문대학(45개) 등 소속에 따른 학제 및 건축사 종류 구분
입학자격	○ 계열별 입학	○ 독자적인 입학전형	○ 고교 졸업 후 바칼로 레아 취득자 ○ 독자적인 입학전형	○ 건축과 독자적인 입 학전형	○ 13년의 교육 후 시험 을 통해 대학지원자격 (Abitur) 취득 ○ 중앙에서 배정
졸업연한	○ 학부 4부 ○ 대학원 : 2년(석사) 2년(박사)	○ 학부: 4~5년 ○ 대학원: 1~3.5	○ 최소 5년 + 1년	○ 보통 7년	○ 보통 6년 (전문대학 3년)
교과과정	○ 보통 건축설계 4학점 12시간 ○ 4학년 시 대부분 전공 분류(강좌제)	○ 6학점, 12~15시간의 설계 및 2~3개 연계과 목으로 구성된 설계 스 튜디오 중심 교육	○ 총 20개 단위 과정 이 수 8(기초과정) + 12 (공인 건축가과정) ○ 전체 과정 시간의 2/3 이상이 설계 관련 의 공동 필수 ○ 교양과목은 실무에 필요한 외국어	○ 교양과목 없음 ○ RIBA 건축사 자격과 연계된 교과과정 편성 및 과정 통과시험 ○ 공대 소속이 대부분 이나 설계 교육 위주 (60%~90%)	○ 교양과목 없음 ○ 기초, 전공의 2개과 정 ○ 공대 소속이 대부분 이나 설계 교육이 주체
건축사(가) 자격	○ 대학 졸업 후 일정 기 간 (2년) 실무 경력 후 시 험 자격(우리와 동일)	○ 건축학사(B.Arch) 졸업시 4년 건축석사 (M.Arch) 졸업시 3년 실무 후 시험 자격 ○ 일부 지역 5~6년제의 경우 학위 취득과 동시에 응시 가능	○ 국립대학 졸업시 D.P.L.G 학위 (공인 건축가 자격부 여) ○ 사립대학인 경우 학 교의 졸업장이 자격증 (예, DESA).	○ 3차례 학과 과정 시 험 통과 시 학위 및 건 축사 자격 부여	○ 졸업 시 건축사 자격 부여 ○ 2년의 실무 경험 후 소속 대학의 성격에 따 라 3종류의 건축사
실습기간		○ 일부 학교는 방학 중 실습(학점 인정)	○ 재학 중 월 2회로서 계속 할 수 있음 ○ 최소 250시간	○ 2년 외무	○ 대부분 재학 중 실습
건축교육의 특징	○ 우리의 교육 체계와 비슷하게 설계, 구조, 설 비를 포함한 종합적 교 육과 설계 교수의 실무 참여로 충실히 설계 교 육 가능 ○ 최근 학과의 재편과 유사학과 통합의 경향	○ 각 학교 및 지역에 따른 다양한 학제 및 교과정 ○ 건축 교육의 다양성 및 경쟁	○ 전체 과정 4000시간 이 의무이나 학교에 따 라 부가 2/3 공동 필수 (모든 대학 동일), 1/3 선택과목(대학 재 량) ○ 국립(23개교), 사립(2개교) ○ 구조, 시공은 국립 토 목 학교, 애콜폴리테크 닉, 애콜센트랄 등에서 교육	○ 왕립 건축가 협회 (RIBA)가 건축 학교 전반의 교육 과정 및 평 가 ○ 설계 과정 중심의 교 과 운영 ○ 정부의 재정 지원 ○ 공학, 역사 등 전문 분야 대학원에서 이수	○ 공과대학 소속이 대 부분이나 건축 교육의 주체는 설계 교육 ○ 모두가 국립(주립) 으로 교육의 질 평준화

③ 인접분야간의 상호대립적 구조

건축의 기술적 속성을 중요시 하더라도 학문성과 전문성의 양면적 특징은 분석적 (Analytical Science) 시각이 아닌 종합적 (Synthetic Science) 시각을 요구한다. 각 분야의 전공분야가 강조된 영역확보 분위기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교육목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④ 산학 협동의 필요성

실무와 교육과의 관계에서 어느 분야 보다도 비중을 두어야 할 설계교육에서 실증적이지 못한 교육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설계 담당교수의 실무참여의 기회 및 폭을 넓혀야 외국교수들과의 형평성 및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이점은 WTO상의 경쟁제한 조치의 기준에 해당이 될 수 있으므로 명쾌한 해석이 요구된다.

⑤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의 부족

1학년은 교양교육으로 4학년은 취업 및 시험준비 기간으로 제외되는 우리의 교육은 외국에 비해 거의 50%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직 자격의 요건으로 교육기간의 문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충분하다.

⑥ 교육의 이념 및 목표

이제 우리나라에는 건축사와 건축기술자를 분리 육성할 시기가 되었다. 건축사를 건축기술자로만 분류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 30년 동안의 교육 및 사회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반전되고 있는 요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기술과 설계교육의 문제는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했던 울름(ULM) 조형대학(Hochschule für Gestaltung)의 성장과 자멸해 가는 과정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20세기 기술문명이 부여한 두가지 상이한 임무, 기술과 디자인 사이의 갈등) 이론과 실제 사이의 모순을 극복치 못하고 과학과 기술 위주의 커리큘럼에 의해 파멸해가는 필연적 과정은 오늘의 우리가 음미 해야만 할 가치가 있는 선진국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안)의 문제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

<표 - 11>

건축(공)학과 학제 및 학위제도(우리나라 '95)

구 분	전 문 대 학	대 학(교)		
		학 부	석 사	박 사
교육목표	중간기술자(Technician) 기술공학자(Technologist) 등 중견기술자 양성	건축가(Architect), 건축 기술자(Engineer) 등 전문가 양성	고도의 전문가, 건축공학자 양성	
학위		공학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선발방식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의하거나, 내신성적과 대학수학 능력시험 및 대학별 고사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하여 선발(단,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은 성적총점의 40%이상이어야 한다.)		전공분야의 지식과 외국어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	전공분야의 지식 및 제1외국어와 제2외국어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
최소 수학연한	2년	4년	2년	3년
각종 기술 자격 응시자격	기사2급	졸업예정자		
	기사1급	졸업후 실무경력 2년	졸업예정자	
	건축사	졸업후 실무경력 7년	졸업후 실무 경력5년	졸업후 연구경력2년 인정
	기술사	졸업후 실무경력 9/11년	졸업후 실무경력 7/9	졸업후 연구경력2년인정

건축은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적 영역이다. 사람이 매일의 삶을 과학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건축을 문화현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을 기술 중심의 입장으로만 보는 시각은 마치 사람의 삶을 집단농장과 같은 생활로 유도해야 된다고 믿는 것과 동일하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의 세계는 불확실성과 다양성의 가치에 의해 재편 되는 과정에 있다. 다양성의 강조는 획일성을 배제함은 물론 통합적 의미의 집중화도 거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①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한 입법취지

GATS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서비스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새로운 도입 또는 수정에 관하여 신속히 그리고 적어도 해마다 서비스무역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AGP 전문에는 “자국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을 제정, 채택하거나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과 같이 투명성(Transparency)을 강조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전제를 의미하는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국가정책목표(AGP제6조, 국내규제)라는 기준의 범주에 드는지에 대한 검증과 아울러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적용 가능한 수준과 비교하여 각 서비스분야 및 업종에서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장벽의 수준(The overall level of barriers to trade in service)을 높여서는 아니된다.라는 GATS 제5조(경제통합) 4항의 기준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달리 말하자면 WTO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각국의 해당 개별법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전문직 서비스에 들어있는 건축설계 등은 각국의 고유한 기준에 따른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의 건설산업기본법처럼 협정 체결후에 제정이나 개정되는 법에선 협정이전의 기준보다

자료 : 건축교육백서

국내 업종에 대한 보호나 규제 차원의 기준 강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설계” 등과 같이 세부적인 기준과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서의 기준미비는 GATT사무국의 서비스분야별 분류목록(MTN, GNS/W/120)을 구속력 있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건축사법 등과 같은 다수의 개별법은 그 입지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고 본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의 필요성

〈표-8〉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서비스와 건설서비스분야가 성격이나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WTO체제하에서 한울타리 내에 포함된 이상, 여기에 맞추어서 설계분야와 건설분야가 망라된 기본법의 법제정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전문직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와 건설서비스는 전혀 이질적인 두가지의 업종구분으로 되어있는 관계상 각각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그 유기적인 상관관계만을 명시하는 법체계나 법리가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으로 해석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설계분야에 있어서 GATS의 제5조 4항, 제6조 5항, 4항, 6항, 제7조 1항, 5항과 제19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등이며 특히, AGP의 제6조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의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한 명쾌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덧붙인다면 현행 건설업법을 개정해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위법개념의 건설산업기본법의 구성이 적절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건축분야와 건설분야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③ 건축과 건설의 구분

WTO체제의 CPC(중앙상품분류)에 의할 것같으면 건축분야는 867series로 시작되는 전문직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로 되어 있고 건설분야는 51series로 시작되는 건설서비스(Construction Services)로 구분 되어있다.

〈표-12, 13, 14〉

건축분야(8671~8674)는 크게 4가지 분류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선 설계행위의 분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설계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법체계상 건축분야에서는 8672, 8673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건설사업관리자(제2조 6호, 7호, 제24조) 조항에 있어서도 상기의 개념을 적용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시장접근에 대한 상업적 주제

GATS 제1조 제2항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통한 서비스공급에 근거하여 우리나라가 양허한 분야중 건축설계분야에서만은 시장접근에 의한 상업적 주재의 필요가 강조되어 있다. 달리말해서 외국의 건축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사나 대표사무소 또는 법인 등의 영업형태를 우리나라에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건설의 경우에는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경우 우리나라에 회사 등의 영업형태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다. 따

〈표 - 12〉 정부조달협정(AGP) 부속서4. 서비스분야 양허표

GNS/W/120	CPC	분야 및 업종	
I . A. d.	8671	Architectural Services	건축설계서비스 (단서추가)
I . A. e.	8672	Engineering Services	엔지니어링 서비스
I . A. f.	8673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종합엔지니어 링 서비스
I . A. g.	8674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

〈표 - 13〉 정부조달협정(AGP) 부속서5. 건설서비스 양허표

CPC	분야 및 업종	
511	Pre-erection work construction sites	정지작업
512	Construction work for building	건축
513	Construction work for civil engineering	토목
514	Assembly and erection of prefabricated construction	조립건축
515	Special trade Construction work	전문건설
516	Installation work	설비공사
517	Building completion and finishing work	마감공사

〈표 - 14〉 표-12의 Architectural Services의 단서(추가)

업 종	추 가
8671 Architectural Service	<p>Supply of services by foreign architects through joint contracts with architects licensed under Korean law will be allowed from January 1, 1996.</p> <p>Foreign architects licensed under their home country's law may acquire a Korean architect license by passing a simplified examination which covers only two of the regular test's six subjects : architectural laws and regulations and architectural desig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1. 1부터 한국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건축설계서비스 공급은 허용 - 외국건축사자격을 소지한 자는 6개 건축사 시험과목중 건축법규와 건축설계에 대한 시험만 합격하면 한국 건축사 자격취득 가능

(주) 표12, 13의 한글 번역은 대한민국 정부 공식번역문임.

라서 향후 턴키제도 등의 시행에 있어서도 설계와 공사 주체의 독립적 구분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⑤ 전문직 서비스의 성격

WTO체계상의 사업서비스 내에서 독특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전문직 서비스의 전문직 즉 Professional이라는 개념은 변호사, 건축사, 의사 등의 전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용어 개념이다. 외국의 대형 변호사 사무실 (로펌 law firm)이나 대형 설계사무소의 구성에서도 전문

인들 끼리의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변호사나 비건축사 등과 고용관계를 이루는 형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GATS에서도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만은 특별히 별도로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결정 (Decision concerning Professional Services) 조항을 두어서 자격 인정과 면허 등에 대한 국제통일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여 사업서비스 분야의 여타 업종과도 차별성을 부여하고 있다.

(6) 용어의 개념과 해석

<표-13> 건설분야 양허표상의 512. Construction Work for building은 건축물공사 혹은 건물시공을 뜻하는 것이지 “건축”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될 용어개념이다. 건축분야의 설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각각 표-15과 같은 용어의 해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표-15. 참조)

(7) 각종 기술사양의 기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건축계 전반에 걸쳐 가장 막중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현실적인 사항인데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용 언어에서부터 품질, 성능, 안전도, 설계도서의 기준, 전문용어 등 어느 한 항목이라도 단기간에 준비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진다. 더욱 이 성능 시방서 문제에 이르러선 유구무언 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말이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은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의 거의 대부분이 이부분의 비중이라고 생각되어진다.

- 우리가 언제 성능 시방서를 만들어 보았던가?
- 우리가 언제 품질에 대한 기준을 공부해 보았던가?
- 우리가 언제 KS가 아닌 ISO 기준의 설계를 해 보았던가?
- 우리가 언제 안전도를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도면을 작성해 보았던가?
- 우리가 언제 영어나 불어로된 설계도서(입찰서류 포함)를 만들어 보았던가?

혹자는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꿈같은 소리라고 치부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선 당장은 대형 Project에만 해당이 되겠지만 대도시의 소주택에서부터 지방의 우사, 돈사의 설계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각종 국가 제정법률이나 기준을 여러개 만들어서 편리한대로 적용시킬 수가 없을뿐더러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기술사양의 기준 또한 여럿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용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상승요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 또한 간과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다.

이상을 요약하면,

- 가. 건설산업기본법은 꼭 필요한 법이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설계의 규정은 필히 명시되어야 한다. 동일한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조항(속칭 CM조항) 등에서도 설계와 감리의 개념은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표-15〉

설계	Architectural Services : 건축설계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등을 말한다. 일반적인 Design Service(건축설계)는 물론 Space Planning Service, Interior Design Service 및 단지 계획, 환경계획 경우에 따라 Master Plan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Engineering Services : 기술용역 혹은 기술설계 토목(건축), 구조, 전기, 냉·난방, 소방 등 Consultant의 업무를 포함하며 실시설계를 의미한다.
감리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 일괄용역 혹은 터키설계 터키방식으로 발주되는 사업의 설계를 의미한다. 현 우리나라의 감리를 Inspection(외국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이 수행)이라 한다면 CPC 86764 Technical inspection Service(기술감리, 정부원문은 기술적 진단 서비스로 되어 있음)로 보아야 하고 경찰권에 해당하는 감독기능의 역할은 별도의 해석이 필요
	CPC 86601 Project Management Services(사업관리 서비스)만이 양허되어 있고 CM은 해당 조항 없음.

* 일반적으로 Engineering Services의 정의는 공학적 설계(토목, 건축, 구조, 전기, 기계, 소방 등)를 의미하고,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는 Architectural Service와 Engineering Services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하지만 CPC 분류의 기준은 위와 같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포함되는 건축설계와 건설은 구분되어져야 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설계와 감리의 정의 및 기준에 대한 후속 위임조항이(건축사법이나 시행령) 없으므로 기본법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구체적 기준이 언급되어야 한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은 기술사양에 대한 기준을 명기하여야 한다.

바. 상기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면 건축의 개념은 명확해질 것이고 Professional Services중의 건축설계 만큼은 (다자간 협정의 협상태도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chitects로 되어 있음) 비건축사(건설회사, 기업 등)의 업무영역이 될 수도 없으며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는 비건축사의 업무가 될 수도 있음) 불공정한 경제활동(공정거래위배)이라고 해석해서도 안됨은 물론이다.

급격한 WTO체계를 맞이하여 우리정부의 깊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도 국제경쟁력이라는 화두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기업이나 업종을 보호하려드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들 나라들의 기본자세는 말로는 무한경쟁을 외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제약이 많은 경쟁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향후의 여러가지 후속협상에서나마 우리의 국가적, 민족적 Identity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모색이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국내법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대기업위주의 편향적인 시각이나 국제사회 특히 서양의 보편주의만을 수용한다는 태도는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민족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우리모두 공유하면서 대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 조직체계하에서의 협력관계 이기를 희망한다.